

제5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26. 4. 29.(수) 16:05

2. 장 소 :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층 전체회의장

3. 참석위원 : 김종철 위원장

고민수 위 원

류신환 위 원

최수영 위 원

이상근 위 원

윤성옥 위 원 (6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2026년 제2차 및 제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, 제4차 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
접수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*」 제9조에 따라 의결안건 '사'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'가', '나', '다', '라', '마', '바'는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* 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3조 제3항의 경과규정에 따라, 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」을 제정하기 전까지 「방미통위 설치법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규칙을 따름

⑥ 의결사항

가. 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(안)에 관한 건(2026-05-396)

- 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(안)에 관한 건에 대해 광동엽 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방미통위 및 방미심위 위원의 결격사유 중 방송·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방미심위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함

나.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정책국 소관 행정규칙 개정(안)에 관한 건(2026-05-397)

-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정책국 소관 행정규칙 개정(안)에 관한 건에 대해 장대호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 및 「방송법」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규칙 제명 및 기관 명칭 변경 등 「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」, 「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」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함

다. 2024년도 한국방송공사(14개 라디오방송국) 재허가에 관한 건(2026-05-398)

- 2024년도 한국방송공사(14개 라디오 방송국)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 이기훈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한국방송공사 14개 방송국에 대하여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허가를 하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
- 허가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, 재허가 조건 중 지역 라디오 방송국별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에 대한 개선 계획 관련 조건은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1안으로 심의·의결함

라. 2024년도 (주)엠비씨경남(진주창원 제2FM) 재허가에 관한 건(2026-05-399)

- 2024년도 (주)엠비씨경남(진주창원 제2FM)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 이기훈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(주)엠비씨경남의 2개 방송국에 대하여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허가를 하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

- 허가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, 재허가 조건 중 방송평가, 재난방송, 라디오 제작 투자에 대한 개선 계획 관련 조건은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1안으로 심의·의결함

마. 2024년도 (재)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(교통FM) 재허가에 관한 건(2026-05-400)

- o 2024년도 (재)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(교통FM)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 이기훈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(재)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(교통FM)에 대하여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허가를 하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
-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및 경영상황 악화 등 상황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업광고를 허용하고, 향후 공적 지원 확대 등 주요한 경영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상업광고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할 수 있음
- 허가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, 재허가 조건 중 자체심의제도 개선, 청문 시 제출한 경영 개선 방안, 기부금 운영 방안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1안으로 심의·의결함

바. 연계정보 안전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(2026-05-401)

- o 연계정보 안전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 심아미 디지털이용자 기반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6 제2항을 위반한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연계정보 안전조치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, 과태료의 경우 가중사유를 적용한 1,125만원을 부과하는 1안으로 심의·의결함

사.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(2026-05-402) (비공개)

7 기타사항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기로 함

6. 폐 회 (17:33)